

제5절 세무과

1.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17개 세목으로 시세(13개 세목), 구세(4개 세목)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 시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 구세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 목적세 : 사업소세

다. 지방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시 세

가) 취득세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재산권의 취득시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물의 증·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나)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과세되며,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다)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 (1)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 및 농업소득세액의 10%이며
- (2)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개인·법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가 가장 잘 부각된 세목이다.

라)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포함된 세금으로 매년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1)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로 부과

-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을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
- (2)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비영업용 승용차량구입(등록기준일)후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체감하여 차령 12년이상 경과시 50%(한도)까지 경감
- (3)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등록시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2) 구 세

가) 면 허 세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검사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세법상 별표에 열거된 대상을 과세객체로 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과징하고 있다.

나) 재 산 세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로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며 지가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납기로 부과된다.

라) 사업소세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의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다.

사업소세 납부기준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할은 매월 종업원 50인 초과, 재산할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3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주력하고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연중 체납액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재정 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60,120백만원을 부과하여 213,03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003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04.2.29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A)	(C/B)	
합 계	계	197,054	260,120	213,032	108.1	81.9	
	시 세	174,153	227,925	189,068	108.6	83.0	
	구 세	22,901	32,195	23,964	104.6	74.4	
현 년 도	계	193,975	222,221	209,188	107.8	94.1	
	시 세	소 계	171,697	197,382	185,940	108.3	94.2
		취 득 세	43,275	47,906	45,813	105.9	95.6
		등 록 세	47,381	56,681	56,316	118.9	99.4
		주 민 세	35,164	41,672	37,042	105.3	88.9
		자 동 차세	14,984	16,838	14,282	95.3	84.8
		도시계획세	8,721	9,807	9,310	106.8	94.9
		공동시설세	4,585	4,919	4,664	101.7	94.8
		지역개발세	9	10	9	100	90.0
		지방교육세	17,578	19,549	18,504	105.3	94.7
	구 세	소 계	22,278	24,839	23,248	104.4	93.6
		면 허 세	771	911	781	101.3	85.7
		재 산 세	7,596	8,473	7,751	102.0	91.5
		종합토지세	8,260	9,206	8,738	105.8	94.9
		사 업 소세	5,651	6,249	5,978	105.8	95.7
과 년 도	계	3,079	37,899	3,844	124.8	10.1	
	시 세	2,456	30,543	3,128	127.4	10.2	
	구 세	623	7,356	716	114.9	9.7	

□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목 표 액	183,577	168,594	197,054
부 과 액	222,886	247,190	260,120
징 수 액	168,578	204,168	213,032

다. 지방세정 운영

1)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

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구민 존중을 위한 납세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5) 성실납세자 표창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78명을 선발하여 표창수여와 벽시계 및 성실납세자 스티커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체납발생의 최소화 등 자치재정의 원활한 운영기반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 37,899백만원중 10.1% 3,844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7)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8) 지방세정운영 성과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한 2003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인천시 10개 군·구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나.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있는 것도 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 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 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다. 2003년도 세외수입 부과 · 징수

□ 2003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2004.2.29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계		46,156	83,576	76,597	60	6,919	91.6
경 상 적 수 입	소 계	17,794	17,701	17,582	0	119	99.3
	재산임대수입	178	233	187	0	46	80.3
	사용료수입	821	967	911	0	56	94.2
	수수료수입	8,828	8,153	8,137	0	16	99.8
	사업수입	294	309	309	0	0	100
	징수교부금	6,020	6,326	6,325	0	1	100
	이자수입	1,653	1,713	1,713	0	0	1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28,362	65,875	59,015	60	6,800	89.6
	재산매각수입	1,597	2,384	2,384	0	0	100
	순세계잉여금	22,808	22,808	22,808	0	0	100
	이월금	1,459	30,373	30,373	0	0	100
	부담금	678	746	743	0	3	99.6
	잡수입	1,543	3,882	1,939	0	1,943	49.9
	과년도수입	277	5,682	768	60	4,854	13.5

라. 세외수입 증대 추진 방안

- 1) 세외수입의 전산화 추진 완료
- 2) 세외수입담당자 체납정리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3)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
- 4) 세외수입 부서별 비교평가 및 분석실시로 대책 강구

4. 200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

가. 2004년 지방세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년당초 목표액(A)	2004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합 계	계	195,024	209,134	14,110	107.2	
	시 세	174,860	185,425	10,565	106.0	
	구 세	20,164	23,709	3,545	117.6	
현 도	계	191,733	205,375	13,642	107.1	
	시 세	소 계	172,404	182,356	9,952	105.8
		취 득 세	41,050	45,678	4,628	111.3
		등 록 세	48,302	54,373	6,071	112.6
		주 민 세	34,331	34,121	△210	99.4
		자동차세	17,722	16,124	△1,598	91.0
		농업소득세				-
		도시계획세	8,615	9,293	678	107.9
		공동시설세	4,572	4,874	302	106.6
		지역개발세	9	9	0	100
		지방교육세	17,803	17,884	81	100.5
	구 세	소 계	19,329	23,019	3,690	119.1
		면 허 세	695	782	87	112.5
		재 산 세	6,554	7,723	1,169	117.8
		종합토지세	7,275	8,570	1,295	117.8
		사업소세	4,805	5,944	1,139	123.7
과 년 도	계	3,291	3,759	468	114.2	
	시 세	2,456	3,069	613	125.0	
	구 세	835	690	△145	82.6	

나. 2004년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년당초 목표액(A)	2004년 목표액(B)	증감 (B-A)	비율 (B/A)
계		33,800	31,313	△2,487	92.6
소 계		15,709	17,696	1,987	112.6
경 상 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184	167	△17	90.8
	사용료수입	809	1,618	809	200
	수수료수입	8,699	8,672	△27	99.7
	사 업 수 입	309	179	△130	57.9
	징수교부금	4,360	5,690	1,330	130.5
	이 자 수 입	1,348	1,370	22	101.6
소 계		18,091	13,617	△4,474	75.3
임 시 적 수 입	재산매각수입	18	712	694	3,955.6
	순세계잉여금	14,000	9,000	△5,000	64.3
	이 월 금	1,500	1,500	0	100
	부 담 금	1,120	732	△388	65.4
	잡 수 입	1,190	1,386	196	116.5
	과년도수입	263	287	24	109.1